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217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준동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C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김성주

변 론 종 결 2021. 11. 3.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65,94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1. 9. 10.부터, 피고 D은 2021. 9. 28.부터 각 2021.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22,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6. 10. 26. A과 보증금액을 15,000,000원, 보증기한을 2021. 10. 26.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A이 2019. 6. 12.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은행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9. 5. 이 사건 은행에 A의 채무 9,128,3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A과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들과 A은 2006. 10.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부 F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던 중 A이

2019. 5. 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2. 11. 5. 근저당권자 G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37,2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9. 5. 31. G조합에 피고 D이 15,500,000원을, 피고 C이 15,623,218원을 각 대위변제한 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A의 파산 및 원고의 소송수계

1) 원고 보조참가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A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24. A은 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 이 사건 소를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이라는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이 2019. 5. 3.인 사실, A이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19. 8. 20. 무렵 채권자들에게 합계 432,788,122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시기,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해 받은 급부를 파산재단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선의 항변

피고들은 선산으로 사용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지키고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A의 친형인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하여

A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이 없는 점, 피고들과 A이 별도의 매매계약을 작성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들이 2021. 7. 19.자 답변서에서 “이번만이 아니고 다른 채권채무관계로 몇 차례 대위변제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A의 다른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았다는 추정을 반복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그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고(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부인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그 이전부터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기준시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회생법 제397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즉시 소급하여 무효로 되어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96조에 의해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인의 소에서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은 부인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2021.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금액을 확장하면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부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신청서 부분이 2021. 9. 9. 피고 C에게, 2021. 9. 27. 피고 D에게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가액배상의

기준시점은 2021. 9. 무렵이다.

3)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있었을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나 부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재산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할 때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액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21. 9.에 가까운 2021. 8. 22.1)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A 소유의 1/3 지분의 시가가 29,094,660원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A 소유의 1/3 지분의 시가가

4,594,500원인 사실,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설정되었던 G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이 31,123,218원(= 15,623,218원 + 15,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시가는 그 이후로도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565,942원(= 29,094,660원 + 4,594,500원 - 31,123,218원)이다.

4) 소결론

그렇다면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2,565,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송달로 부인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피고 C은 2021. 9. 10.부터, 피고 D은 2021. 9.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태지영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전북 임실군 I 임야 20,782㎡
2. 전북 임실군 J 임야 919㎡, 끝.

1) 감정인은 감정일을 2022. 8. 22.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